

APEXEL
CODE OF ETHICS GUIDE BOOK

에이펙셀생활건강
윤리강령



Contents

회사소개

방침 및 절차

회원준수사항

(주)에이팩셀생활건강은 에이팩셀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로 전자, 반도체 의약품, 식품, 철강, 건설, 화장품 등 모든 산업 분야에 현존하는 제조 방법이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낸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에이팩셀생활건강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매년 경이로운 매출 신장과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국가와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이팩셀의 사명]

에이팩셀은 건강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팩셀생활건강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급 솔루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이팩셀생활건강의 사명은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삶에 대한 해답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인류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에이팩셀생활건강은 최고의 마케팅과 넓은 시장의 개척을 위한 전략 기획을 통해, 세계의 일류 건강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침 및 절차

I 제 1 장 총칙 I

제 1 조 [목적]

본 회원관리 규정은 (주)에이펙셀생활건강 (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들이 소비자활동 및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원들 간의 관계와 회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사업문화의 정착과 회사와 회원간의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용 범위 및 회원 의무]

본 규정은 다른 서류와 함께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회원은 본 규정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관계법률 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판법"이라 한다)을 준수합니다.

제 4 조 [적용 대상 및 회사의 권한]

본 규정은 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 적용되며, 회사는 회사의 정도경영과 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규정을 위반한 회원을 상대로 경고 조치 및 계약해지를 통해 회원에게 부여한 권리 일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공문 등의 방식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입니다.

I 제 2 장 회원 관리 규정 I

제 5 조 [회원 등록]

회원이라 함은 신청자가 회원 등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회원번호를 부여 받고, 회사에 등록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 제품구매 요건 등 재정적 부담은 없으며 회원 등록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적법한 회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심사하여 등록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 회원으로 등록을 승인할지 여부는 회사의 전적인 재량 사항이며, 회사는 반드시 신청인을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 복역 중이거나 어떠한 종류의 교도기관에 수감중인 자
- 합법적인 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비자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 등록의 절차와 방법]

모든 회원은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 인정합니다.

즉, 차명 가입 후 타인에 대한 권리 주장은 불가합니다.

- 회원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 등록시킨 회원은 자격이 해지 (박탈) 됨은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회원 자격 승인]

회원 자격은 신청서가 회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법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번호가 부여되고 회사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원 자격 승인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허위의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금지되며, 결격 대상자가 등록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 자격 의미]

회원은 회사의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및 제품 구매등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자영업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준수)]

회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회사의 제규정을 충부하게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해야 합니다. 회원은 새로운 문화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항상 성의와 진실로서 타인을 응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깨닫고 장려금제도 및 상품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홍보에 입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학습과 훈련에 노력해야 합니다.

타사의 제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으며, 오직 회사 상품의 우수성과 경쟁력만을 가지고 진실과 신용으로 사업에 임해야 합니다.

소비자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품의 우수성이 소비자에게 왜곡되어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신뢰에 의해 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사업의 기본 원리이자 성장의 원천이므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후원 회원들에 대해 성실과 책임을 가지고 지도, 교육, 육성함으로써 형성된 사업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원의 이익은 반드시 스스로의 노력과 상하회원과의 적절한 교육 및 후원 관계에 의해서만 성취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제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금지 사항]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의 외형, 내용품을 사전에 승인 없이 추가, 변경, 삭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회사의 상호, 상표, 상품명 등 기타 공업 및 지적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도용,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며, 회사에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타 회원이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도록 공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사실을 발견 시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1 조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2)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회원에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 4)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6)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타 회원에게 등록 (가입) 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5 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라 함은 가입 (등록) 비 또는 자격갱신의 경우 1 인당 연간 1 만원이며, 판매 보조물품의 경우 1 인당 연간 3 만원, 교육비 (공정위가 인정한 교육) 의 경우 1 인당 3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한다.

7) 회원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그 하위회원에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8)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타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9) 회사의 피용자가 아닌 회원을 회사에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케 하는 행위.

10)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

제 11 조 [회원의 탈퇴 및 비활동 회원 전환, 자격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원탈퇴 신청서 (회사양식) 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며, 탈퇴 신청 전에 소비하지 못한 상품을 청약 철회 규정에 따라 회사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단 이미 발생한 회사와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3 개월 경과 후 회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원은 등록 후 3 개월 이내에 구매 실적이 없는 " 판매원 " 회원은 회원자격이 자동 해지됩니다.

※회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회원 자격이 해지 (박탈) 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마지막 구매가 이루어진 달로부터 3 개월 동안 구매 실적이 없는 " 판매원 " 회원은 회원자격이 자동 해지됩니다.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회원으로서의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추천 및 후원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이 재등록하게 되었을 경우 탈퇴 또는 해지 전에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권리는 회복되지 않으며 재등록 시에는 최초 신규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탈퇴일 또는 해지일 이후 회사 및 회사와 관련된 교육지사, 센터 등 의 장소에 출입 및 제반 교육, 행사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의 보너스 (수당) 및 모든 보상플랜은 탈퇴 또는 해지일 기준 당기 또는 당월 분부터 지급 및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직권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사는 회원의 권리를 직권으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회원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 회원이 회사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품의 과대·과장 광고 등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방관법 및 회사의 방침과 절차를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행위를 회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정을 요청한 바에 따라 15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반복하여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회사 내에서 이미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회원을 본인의 하위 조직으로의 등록을 중용하거나 본인을 추천인으로 등록을 하게 한 경우
- 이미 등록하여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의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 내에서 추천인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추천인을 변경한 회원의 하위 조직은 원래의 추천인에게 편입한다)

- 회사에 등록한 사업자가 타 경쟁업체에 등록하고 그 업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 회원은 승급 또는 후원 수당 획득 목적으로 회원 (또는 잠재 회원) 에게 후원수당 지급 기준외의 모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블로그, SNS 등)
- 인터넷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제 3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어도 연관성이 규명되는 공급행위로 간주)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회원번호를 박탈당한 (직권해지된) 회원이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박탈되었던 사유를 검토하여 회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탈퇴 및 해지의 결과]

탈퇴 및 해지의 결과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말하며, 이는 회원의 자격으로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회원이 개인적으로 추천하였던 하위 회원의 새로운 추천인은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탈퇴 및 해지가 적용될 경우에도 회사에 진 채 무나 회원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이나 규정위반에 따라 부과된 채무는 존속됩니다.

제 14 조 [추천인의 변경 및 회원자격 변동으로 인한 하위라인의 처리]

① 추천인의 변경

회원은 등록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추천인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당사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는 라인을 변경한 유인행위 등으로 간주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자격변동으로 인한 하위라인의 처리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등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그 하위의 라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격이 변동되는 회원의 기존 권리는 상실됩니다.

제 15 조 [회원의 광고]

1. 매체로부터의 문의 :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회사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라디오 , TV 및 출판 발표를 포함한)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로부터의 문의는 회사에 직접 위임하여야 합니다 .
2. 광고 및 선전 : 회사는 회원들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광고 및 선전을 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 단 , 윤리적인 마케팅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지침이 필요하고 , 이 지침은 회원 간의 계약을 일부로 규정하며 ,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주)에이팩셀생활건강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고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잠재적인 소득에 관하여 비합리적이고 현혹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전을 하는 행위

·특정인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주)에이팩셀생활건강에서 어떠한 이득이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거나 진술하는 행위

3. 과대 광고 : 회원은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과대광고 및 모든 제품의 변경 , 추가 ,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원 개인이 제작한 제품에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사전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쇄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기를 요구할 수 있고 , 제작에 관련된 모든 회원들은 경고 조치됩니다 . 또한 재차 이러한 사유가 적발될 시에는 회사는 그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회원이 개별적으로 표시·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작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광고 심의를 할 해야 할 의무가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
4. 상표권 및 저작권 : (주)에이팩셀생활건강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하여 (주)에이팩셀생활건강이 사용하는 회사명 , 상표 또는 로고 , 디자인 및 기타 재산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회원이 (주)에이팩셀생활건강의 회원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5. 광고 승인 : 광고에 회사 상표 또는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 각각의 광고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광고 승인을 받는 것은 회원들의 책임입니다 .
6. 회원의 인터넷 운영
 - ①개인이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해 회사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이트상에서는 회사 정보, 제품정보, 사업정보 등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본 방침을 위반 할 경우 회사의 방침 및 절차에 의거하여 시정조치 및 사이트 폐쇄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의 경고 및 해지 조치를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 (주)에이펙셀 생활건강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웹사이트를 구축,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 또는 지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및 이와 상응하는 사이트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회사명 및 기타 저작권이 있는 상표명 등을 도메인네임, URL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 개인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사업에 사용 한 경우,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회원 실명으로 운영된다는 내용과 회사의 정식 홈페이지가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웹 사이트상의 모든 내용은 관련법규에 준수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특히 당사 수당 지급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대 과장광고를 하거나, 제품에 대한 과대광고 및 의학적 효과를 주장하여서는 안됩니다.

·웹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한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7. 사진, 기록 및 기타 매체: 질병과 연관성을 암시 또는 내포하는 전/후 사진, 비디오, 또는 기타 기록매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영업 활동 규정]

1. 회원 기재사항 변경

회원등록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보변경신청서 (당사 소정 양식)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급 및 보상

(주)에이펙셀 생활건강의 모든 회원은 당사에서 장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후원수당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하고, 매출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품구매주문서 작성 및 보관의무

반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에이펙셀 생활건강의 모든 회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에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 반품 등에 의한 후원수당의 회수

① 본인 및 하위 회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 (반품) 등의 이유로 해당건에 대해 본인이 기 지급받은 후원수당을 반환하는 채무를 지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게 지급될 후원수당 금액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 합니다.

②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회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합니다.

5. 영업방해

회사의 회원이었던 자가 동종업종의 타 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회원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회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판매 재고 보고 (방판법 제 8 조 1 항, 2 항) 등

회원은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반품) 을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반드시 이 내용을 모두 읽고 숙지하여야 하며, 여기에 명시된 모든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회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당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 회원은 본 윤리강령을 읽고 이를 준수하는 데 동의했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윤리강령은 회원 계약의 주요 부분이며, 회원 권리 보호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적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본 윤리강령의 위반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지 및 회원의 모든 이익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해당 회원의 모든 후원수당을 유보시킬 수 있으며, 만약 회원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조사 기간 동안 유보된 후원 수당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제재조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 17 조 [윤리]

회원들은 최고의 정직과 성실의 자세로 고객, 회원,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그리고, ㈜에이펙셀생활건강의 방침 및 절차의 내용뿐만 아니라 윤리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비윤리적인 행위]

회사는 회원이 비윤리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비윤리적인 행위임이 분명할 때에는 이에 관여합니다. 회원의 활동이 비윤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하고 그러한 활동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습니다. 비윤리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을 경유하는 등으로 제품을 간접 공급하는 행위
- 다른 회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제품 또는 ㈜에이펙셀생활건강의 수당지급기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비윤리적인 활동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회사의 명칭이 부착된 광고물 또는 판매자료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회사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
- 회사의 수당지급기준을 조작하는 행위
- ㈜에이펙셀생활건강의 영업방침에 대하여 부당하고 현혹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행위

-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 등록을 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행위
- 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폭언 / 협박 / 위력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미풍약속을 해치는 행위
- 타 회원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체하는 등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을 강요하는 행위
- 회사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타 회사에 등록하여 활동하거나, 교섭하는 행위
- 금품으로 하위 회원을 유인하거나 현혹하는 행위
- 타 회원을 본인의 하위나 타사로 유인하는 행위
- 회원으로 등록·활동을 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두개 이상의 회원번호로 활동하는 행위
- 개인 정보를 오용 또는 도용하는 행위
-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
- 그 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제 19 조 [경고 및 회원자격변동]

1. 경고

- ① 본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경고 할 수 있으며 (총 3 회), 경고와 동시에 해당 회원에 대하여 자격 제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소명 시한은 서면 접수일로부터 15 일이며, 소명 시한까지 소명하지 않으면 위배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회원의 자격 정지

- ① 회사는 필요 시 경고 절차 없이 즉시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 ② 회원 자격 정지기간은 1 개월에서 12 개월까지로 합니다.
- ③ 회원이 자격 정지 되면 아래와 같은 행위의 제한을 받습니다.
 - 제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 신규 회원의 추천자격 상실
 - 후원수당 지급 보류

3. 자격해지

- ① 회원은 자격 해지와 동시에 회원으로써의 권리도 상실되며, 회사와의 법률적 관계가 종료됩니다.
- ② 회사의 경고 및 자격 정지 후 회원이 재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직권으로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 위반 경우가 심각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회사는 회원의 자격 해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I 제 3 장 제품 주문 및 상품 인도 I

제 20 조 [제품주문]

회원은 팩스 및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하거나, 본사 비즈니스 센터를 통하여 직접 제품을 주문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주문에 대한 요건은 없으나, 주문량에 따라 배송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재고에 대한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은 합리적인 예상 소매판매량 및 자기 소비량에 근거하여 자기 스스로가 재고량을 결정해야하며 합리적인 재고량을 초과하여 주문할 수 없습니다. 주문에 대한 대금결제는 현금, 신용카드, 은행송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금결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제품이 출고되지 않습니다.

회원은 타인의 서면을 통한 구체적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상품의 인도]

1. 직접수령 : 주문접수 창구에서 발급받은 "구매주문서" 를 회사 상품 출고처에 접수하시면 즉시 상품을 직접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택배수령 : 제품 주문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5 일 이내에 주문 시 신청된 주소로 배달됩니다. (단, 택배사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청약철회규정]

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회사의 상품반품처 (본사고객센터 또는 물류창고)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한 제품 또는 구입자의 과실에 의해 변형, 손상된 제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하며, 제품의 청약철회는 구입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회원에게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은 기 지급한 후원수당 등을 당사에 환급해야 하며, 회원이 후원수당 등을 미 환급할 경우 당사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의 경우 방관법 제 8 조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방문판매원의 경우 제품인도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반품의 접수]

1. 방문 접수

제품내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품을 본사에 방문하여 반품을 접수합니다. 반품관련양식(제품청약철회서)을 기입하고 제품 및 제품내역서와 함께 접수하며 (주)에이팩셀생활건강의 직원은 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택배 접수

반품하고자 하는 제품 및 구매계약서를 물류창고로 발송하고 반품관련양식(제품청약철회서)을 기입하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본사에 접수합니다. 본사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는 거래 내역과 상이한 제품의 택배 반품 접수시 반품요청한 내역이 수량 및 제품의 상태가 상이할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비서류가 미비한 반품 접수건은 관련서류가 모두 도착한 시점을 반품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철회의 효과

① 반품의 환불은 반품이 접수된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 환불합니다.

② 환불의 방식은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반품의 환불은 해당 제품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에게 지급된 모든 수당, 보너스 및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상계하고 환불합니다.

제 24 조 [광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 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방문판매회사의 상 관례 등 일반 상 관례에 준합니다.

본 규정은 2020 년 12 월부터 시행합니다.

회원준수사항

(주)에이팩셀생활건강의 회원은 본 가이드북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중 방문판매원에 관련된 모든 조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방침 및 절차와 윤리강령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당사는 그 경중을 따져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의무" (방판법 제 7 조)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 2 항에 따른 계약서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같을 수 있다.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장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개정 2012.6.1. >

⑤ 방문판매업자등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에이펙셀생활건강 사업안내

회원등록

1. 등록처 : 비즈니스센터 , 홈페이지의 마이오피스 , 팩스접수
2. 구비서류 : 회원등록신청서 (당사양식)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문방법

1. 비즈니스 센터 (본사) 방문 주문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 시 ~ 오후 7 시
 - 결제방법 : 신용카드 , 현금 , 무통장 입금
2. 온라인 주문

배송

배송방법

- ①비즈니스 센터 방문 주문 : 직접 수령 또는 택배
- ②온라인주문 : 택배
- ③배송시간 : 당일주문건에 한해 익일 출고 ,2-3 일 후 수령
- ④택배비용 : 6 만원 이상 무료배송 , 6 만원 미만일 경우 4,000 원 본인 부담